

# DDP 주차장 운영규정

<제정 2015. 1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DDP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관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라 한다.)는 주차장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관리인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 ① 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관리인의 근무시간은 주차장 관리여건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③ 동절기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DDP의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주차장 운영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
- ④ 관리인은 입·출 차량관리, 주차권발급,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가 지정한 감독직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내방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 또는 할인한다.
  1.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언론, 외교용, 경찰, 소방 차량에 대해 면제
  2. 서울특별시 로고 부착 차량, 공무 수행중인 관용차량에 대해 면제
  3. DDP 자체 기획 전시, 행사를 위한 운송 차량에 대해 면제
  4. 국가, 서울시 주관 공공 행사 초청 및 공식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차량에 대해 면제
  5. 설치 작업, 계약, 시설공사, 물품납품, 용역 등 DDP 업무관련업체 차량에 대해 2시간 면제 후 확인 차량에 한해 100분의 50 할인
- ② 제1항의 면제차량은 해당 업무 담당자와 주차업무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에 한한다.
- ③ 이륜차의 경우 1,000cc이하의 이륜차는 경차 할인에 준하는 가격을 징수한다.
- ④ DDP 시설의 유료대관자는 재단의 해당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할당된 주차면에 대해 주차요금이 면제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및 할인대상)

① 주차요금은 5분당 400원(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공용주차장 1급지 요금 적용)으로 하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50을 경감한다.
7.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8. DDP 내의 시설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2이상의 주차요금 중복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제6조(월 정기권)

① 월 정기권의 발행 대상은 장애인 직원(「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이용차량을 우선한다.

- ② 월 정기권 발행 차량의 주차시간은 주차장 운영시간 내로 하며, 월 정기권 금액은 별표와 같다.
- ③ DDP직원 및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의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기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④ 주차장 상황 변동 등 필요시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관리 준수사항)** DDP 주차감독 직원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차인력 관리사업자에게 주차장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명령·지시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이동배치
2. 관리인에 대한 내·외부 교육관리
3. 관리인의 복장 관리
4. 부당한 주차요금징수, 불친절 등으로 민원 발생에 따른 관리인의 인사조치
5. 주차장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6. 기타 DDP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주차관리인의 업무내역)** 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정산기의 유지관리 및 정산내역 작성
2. 외부차량과 내부차량에 대한 주차안내
3. DDP 방문객 안내
4. 내부 주차장 상태 확인과 동절기 제설작업 실시
5.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및 보고
6. 주차차량의 도난 및 파손 방지
7. 기타 주차장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 조치

**제9조(주차관리팀원의 주요 역할)** 주차관리 전담팀 구성원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관리팀장은 개인별 근무 장소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주차감독 담당자에게 보고 후 관리인에게 조치사항 지시
2. 주차관제원은 모니터를 통해 근무하면서 상황 인식 및 대처
3. 평일 근무시간대(주간)에는 주차관리팀장이 총괄 관리
4. 일과시간 외에는 야간근무자 중 방재실 1인을 배치하고, DDP 당직사령이 총괄 관리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①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내에 1주일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관리인이 DDP 주차감독 직원에게 보고 후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전액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 ② 차량소유자가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DDP주차장 내에서 방치된 기간 동안의 주차요금과 견인료, 보관료 등 견인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그 결과를 DDP 주차감독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주차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 주차장관리인 또는 DDP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3. 주차장 만차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 6.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7. 기타 주차장의 안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출차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 2. 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장기 무단방치차량 등)
- 3.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차량 훼손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당사자간 합의 또는 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 4. 사법기관 등의 요구에 의해 차량 출차 거부가 불가피한 경우

**제13조(손해배상)**

- ①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화폐·유가증권 및 기타 귀중품에 대하여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관리인에게 별도로 보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주차된 차량에 방치된 어떠한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갖지 않는다. 다만, 차량에 방치된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기 위한 CCTV 검색 등의 활동에는 적극 협조한다.
- ②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 결정한다.

**제14조(면책)**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는 서울디자인재단이 배상책임을 갖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하는 피해
2.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3.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하는 피해(장기 무단방치차량 포함)

[별표1]

○ 운영시간 및 일반 주차요금 : 24시간 운영

구 분	요 금
시간주차	5분당 400원 (한시간 4,800원)
일주차	50,000원
월 정기주차(월 정기권)	180,000원

○ 요금 면제 대상 및 할인 대상

- 면제대상 : 관용차량, 보도차량, 외교관, 국회·시·구의원 차량 등
- 할인대상 : 서울시 주차 관리 조례 제7조 제1, 7, 8항

구 분	대 상	할인율
DDP 고객	장애인 / 유공(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0%
	경차 / 저공해 차 /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	50%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50%
	2자녀 다둥이 가족	30%
	2만원 이상 구매고객 (전시, 체험, 상품 구입 고객)	1시간 무료
입주사 및 직원	재단 직원, 살림터, 디자인장터 등 입주업체	50%
야간주차	동대문 상인 및 쇼핑객 (야간 : 전일 21:00 ~ 익일 09:00)	50%
이륜차	DDP 주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어 DDP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는 경우	50%
일주차권 할인구매	직원 및 입점업체의 선불권 구매시	50%

○ 월주차 및 유료대관자 임대자 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할인율
월정기 주차	입점 업체 대표차량 1대 및 직원 1인 한정	50%
유료 대관자	각 공간별 대관 기간중 2대까지 (알림1, 2관, 디자인전시관 2대 / 기타 대관 공간 1대)	면제
대관, 임대, 행사 차량	주최자 외 참가업체 비표 확인시	50%
설치, 철수 등 공사, 납품 차량	하역장 외 일반 주차장 이용시	50%